

제2024-77호 2024년 9월 2일(월)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4-382호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	1
○ 여수시 고시	제2024-38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4
○ 여수시 고시	제2024-38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5
○ 여수시 고시	제2024-38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6
○ 여수시 고시	제2024-38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7
○ 여수시 고시	제2024-39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8
○ 여수시 고시	제2024-39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9
○ 여수시 고시	제2024-39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10
○ 여수시 고시	제2024-395호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신기주공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11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4-2607호	낙시어선 승선등록 단말기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7차)	12
○ 여수시 공고	제2024-2626호	2024.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15
○ 여수시 공고	제2024-2633호	자산공원 조성사업 보상협약(1차) 공시송달 공고	16
○ 여수시 공고	제2024-2642호	여수시 이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22
○ 여수시 공고	제2024-2646호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27
○ 여수시 공고	제2024-2653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평사리 1405-52]	28
○ 여수시 공고	제2024-2654호	도로지정 공고[삼산면 서도리 23번지]	38
○ 여수시 공고	제2024-2660호	2024년도 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실태조사 결과 전산입력 보조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40

출 장 소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 고시	제2024-12호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고시	55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 고시	제2024-13호	시물주소 폐지 고시	57

기 타

○여수시 훈령	제414호	여수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58
---------	-------	------------------	----

회									
----------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4년 8월 30일

여 수 시 장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질 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낙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낙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른 낙시어선의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승객의 준수사항) ① 낙시어선 승객은 낙시어선 안전운항, 사고방지 및 낙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한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하 “낙시어선업자 등”이라 한다)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낚시어선의 승객은 승선할 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 확인한 후 승선하여야 한다.

③ 낚시어선의 승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낚시어선의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2. 선내에서 음주를 하거나 그 밖에 안전운항에 방해가 되는 행위
3. 유해낚시도구 및 부적합 미끼를 사용하는 행위
4. 폐기물 투기, 취사 및 그 밖에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
5. 「여수시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낚시어선 영업금지구역으로 낚시어선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④ 기상악화 및 그 밖의 위험상황 발생 등으로 인한 대피 또는 철수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등이 승선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승객은 즉시 따라야 한다.

⑤ 낚시어선에 승선한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 (생활폐기물의 수거) 낚시어선 승객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이하 “생활폐기물” 이라 한다.)을 해상 및 낚시터 주변에 투기해서는 아니되며,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5조 (확인 및 검사) ① 관계 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낚시어선 승객이 수거한 생활폐기물 실적 등을 불시에 확인 및 검사할 수 있다.
② 낚시어선 승객은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계 공무원은 확인 및 검사 전에 낚시어선 승객에게 조사목적을 설명하고 신분증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어선 승객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 채취금지)를 준수하여야 하며, 포획이 금지되는 수산자원을 포획한 경우에는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 전까지 변경되지 아니한 고시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여수시 고시 제2022-189호(2022.5.18.)는 폐지한다.

여수시 고시 제2024-38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에 대해 고시 합니다.

허가번호 (변경일자)	점용·사용 장소	면적	허가받은 자		목 적	변경사항(기간)	
			주 소	성 명		변경 전	변경 후
2019-081 (2024. 8. 29.)	돌산읍 평사리 968-17번지 지선 공유수면	25㎡	여수시 문수북5길 16	김민주	수산물 보관(수조) 시설 운영을 위한 교량 및 수도관 설치	2019. 9. 17. ~ 2024. 9. 16.	2024. 9. 17. ~ 2029. 9. 16.

2024. 8. 29.

여 수 시 장

여수시 고시 제2024-38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에 대해 고시 합니다.

허가번호 (변경일자)	점용·사용 장소	면적	허가받은 자		목 적	변경사항(기간)	
			주 소	성 명		변경 전	변경 후
2019-079 (2024. 8. 29.)	돌산읍 금봉리 882-18번지 지선 공유수면	108㎡	여수시 돌산읍 강남해안 로	김수연	어구적재 및 어구손질	2019. 8. 19. ~ 2024. 8. 18.	2024. 8. 19. ~ 2029. 8. 18.

2024. 8. 29.

여 수 시 장

여수시 고시 제2024-38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에 대해 고시 합니다.

허가번호 (변경일자)	점용·사용 장소	면적	허가받은 자		목 적	변경사항(기간)	
			주 소	성 명		변경 전	변경 후
2019-078 (2024. 8. 29.)	울촌면 봉전리 818-6번지 지선 공유수면	176㎡	여수시 울촌면 광암길	조계천	새고막 선별작업을 위한 바지 설치	2019. 8. 19. ~ 2024. 8. 18.	2024. 8. 19. ~ 2029. 8. 18.

2024. 8. 29.

여 수 시 장

여수시 고시 제2024-38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에 대해 고시 합니다.

허가번호 (변경일자)	점용·사용 장소	면적	허가받은 자		목 적	변경사항(면적)	
			주 소	성 명		변경 전	변경 후
2023-068 (2024. 8. 29.)	삼산면 손죽리 산127번지 지선 공유수면	900㎡	여수시 국포1로 86	(주)삼해개발	해상풍력발전 적지 판단을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21,978㎡ (직접 910.62㎡, 간접 21,067.38㎡)	900㎡ (직접점용 900㎡)

2024. 8. 29.

여 수 시 장

여수시 고시 제2024-39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합니다.

허가번호 (허가일)	점용·사용 장소	점용·사용면적 (㎡)	점용·사용 목적	피 허가 자		허가기간
				주 소	성 명	
2024-053 (24. 8. 29.)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산202번지 지선 공유수면	2,990 (직접 2,530) (간접 460)	오탁방지막 설치	순천시 순광로 21	마정화	2024. 8. 29. ~ 2025. 5. 31.

2024. 8. 29.

여 수 시 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확인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고시 합니다.

점용·사용 (승인)번호 (허가(승인)일)	준공검사 신청자		점용·사용장소	허가면적	준공검사 확 인 증 교부일자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24-22 (2024. 5. 20.)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여수시 웅천동 1893번지 일원	108㎡	2024. 8. 29.	시전동 웅천항 도크시설 보강 정비공사

2024. 8. 29.

여 수 시 장

여수시 고시 제2024 - 39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신고)하고 고시합니다.

승인 (신고) 번호	실시계획 승인 (신고)수리	시 행 자		사업착수 예 정 일	사업준공 예 정 일	점용·사용 장 소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24-37 (2024.7.2.)	2024. 9. 2.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장 (섬발전자원과)	실시계획 승인일	'24.11.30.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634번지 지선	돌산읍 대울마을 호안 등 정비공사

2024. 9. 2.

여 수 시 장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2차) 고시

여수시 신기동 3번지 외 32필지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2차)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9. 2.

여 수 시 장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2차) 사항

1. 사 업 명 : 여수 신기주공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신기주공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김민곤 외 1개사
3. 사업위치 : 여수시 신기동 3번지 외 32필지
4. 사업개요
 - 가. 대지면적 : 65,051.50m²
 - 나. 건축면적 : 12,550.34m²
 - 다. 연 면 적 : 230,880.36m²
 - 라. 규 모 : 지하 4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5개동, 1,365세대
5. 사업기간 : 2022. 6. 30. ~ 2027. 3. 15.
6. 주택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7. 관계서류를 열람하고자 하시는 분은 여수시 허가민원과(☎659-4098)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낚시어선 승선단말기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7차)

2024년 낚시어선 승선단말기 지원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7차 모집
공고하오니 낚시어선 승선단말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9. 2.

여수시장

1. 사업목적 : 해상사고 발생 시 신속한 승선원 확인 및 승선객 편의성을
개선하여 낚시어업 활성화 및 경영 안전 도모

2.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4. 9. 2. ~ 2024. 9. 23.(21일간) ※ (1차~6차) 2024. 4. 11.~ 8. 22
- 지원율 : 도비 30%, 시비 30%, 자담 40% (*구매단가 약 100만원)
- 사업대상 : 「낚시관리및육성법」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어업인
- 지원내용 : 낚시어선 승선단말기 지원
- 지원한도 : 낚시어선 1척당 단말기 1대 지원
- 제외대상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어선법 시행규칙」 제 49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낚시어선)

- 그 밖의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감척대상 어선,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해당 어선을 변경하는 경우 등)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여수시 수산경영과 낚시관리팀(여수시 신월로 648, 국동임시별관), 읍·면·동 사무소 ※가까운 곳에 신청 가능

4. 구비서류

- 가. 어업허가증, 낚시어선 신고증 사본 1부.
- 나. 신분증, 통장사본 1부.

5. 사업 추진절차

- ① 사업신청 → ② 사업자 선정 통보 → ③ 물품 납품 → ④ 준공 및 사업정산

6. 유의사항

- 지원받은 장비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일로부터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이 금지
- 사후관리기간 5년 내 타 시·군 전출, 어선 매도 시 보조금 반납하여야 함.
- 통신비, 수리비 등 유지비용은 지원 제외
- 낚시어선 승선등록단말기를 통해 카드결제 기능 가능

7. 문의처 : 여수시 수산경영과 낚시관리팀(☎ 659-5598)

- 붙임 1. 사업신청서 1부.
- 2. 사업시행지침 1부. 끝.

1) 【별지 제1호서식】

남시어선 승선단말기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단체 등의 명칭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
	주소				
	종사경력	년			
신청내용	어선명 (어선번호)	남시 신고번호			
	어업허가	남시신고 유효기간			
	금융기관 계좌번호				
첨부서류 1. 어업허가증 및 남시어선 신고증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p>○ 상기 본인은 남시어선 승선단말기 지원 사업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도익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권리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신청하였습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2024.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공시지가 열람

- 기 간 : 2024. 9. 2. ~ 9. 23.
- 장 소 : 여수시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 열람대상 : 1,887필지
 - ❖ 2024. 1. 1. ~ 6. 30.까지 토지(임야)대장 상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발생 토지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m²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24. 9. 2. ~ 9. 23.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출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처 : 여수시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 제출방법 : 여수시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에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붙임 1.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1부.
2. 안내문 1부.

2024년 9월 2일

여 수 시 장

자산공원 조성사업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자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보상 협의하고자 문서를 송달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사망,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여 수 시 장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자산공원 조성사업
- 나.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
- 다. 사업위치 : 여수시 수정동 75번지 일원
- 라. 사업기간 : 2020. 6. 25. ~ 2027. 12. 31.

2. 공고내용

- 가. 공고기간 : 2024년 8월 30일 ~ 2024년 9월 19일(20일간)
- 나.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보상계획

- 가.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기한 내
- 나. 협의장소 : 여수시 공원과
(전남 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49, 망마경기장 1층 공원과)(☎061-659-4634)

다. 보상방법 : 현금보상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열람·공고(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절차 진행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마. 협의조건

- 소유권 외의 권리(압류, 가처분, 근저당 등)가 있는 경우 해지 또는 말소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완납 후 협의 가능

바. 보상협의 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일반용 인감증명서 1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매수자: 여수시장 ,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법인등록번호:3612】)
- 주민등록초본 1부(전 주소포함), 통장사본 1부, 신분증 , 인감도장
- 국세완납증명서 1부,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 기타 지장물(물건) 보상청구 시 구비서류 등

4. 공시송달 대상

토지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	편입 면적	지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재	지번				성명	주소	성명 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	종화동	6	17	17	도로	김*근	전라남도 여수시 동정 ****			
8	종화동	24	152	152	전			김*봉		토 지 대장상 소유주
9	종화동	29	502	502	전	최*균	전라남도 여수시 동정***			
10	종화동	39	79	79	전	최*균	전라남도 여수시 동정***			
13	종화동	51-1	314	314* 36/273	전	김*운	전라남도 여수시 종화동 ***			
14	종화동	51-3	387	387*36/273	전	김*운	전라남도 여수시 종화동 ***			
16	종화동	69-6	139	139	대	황*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16길 40, ***호(양재동, 베스트하우스)			
17	종화동	69-7	3	3	대	황*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16길 40, ***호(양재동, 베스트하우스)			
18	종화동	75-1	86	86*12/29	전	김*기	전라남도 여수시 종화동 ***			
19	종화동	75-2	10	10*12/29	도로	김*기	전라남도 여수시 종화동 ***			
22	종화동	79	33	33	대	김*욱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로 50, ***동 ****호(학동,신동아파밀리에)			
25-1	종화동	89	165	165* 20/50	대	최*규	전라남도 여수시 진남상가길 ** (교동)			
26-4	종화동	90-1	519	519*287.6/5 19.4X	전	김*엽	전라남도 여수시 종화동 ***			
26-5	종화동	90-1	519	519*287.6/5 19.4X	전	서*완	전라남도 여천군 삼일면 중흥리 ***			
30	종화동	104	1,098	1,098*3/332	전	박*곤	전라남도 여수시 종화동 ***			
31	종화동	117	271	271	전			최*동		토 지 대장상

										소유주 토대소	지상유 주
32	중화동	118	10	10	도로			최*동			
33	중화동	129	364	364	전	이*광	전라남도 여수시 동 정 ***				
35	중화동	140- 1	169	169	묘지	박*암	전라남도 여수시 중 화동 ***				
37	중화동	164	112	112	전	박*두	전라남도 여수시 동 정 **				
38	중화동	186	129	129	묘지			정*양		토대소	지상유 주
39	중화동	189	76	76	전	박*숙	경기도 용인시 기흥 구 동백2로 12, **** 동 ***호 (중동,어은 목마을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52	중화동	263	172	172	전			김*선		토대소	지상유 주
58-2	중화동	277- 5	120	120* 721/2460	전	최*명	여수시 여서동4길 ** (여서동)	국*건* 보*공*	서울특별시 마포 구 독막로 *** (염리동****-*)		압류
64	중화동	645	162	162	묘	안*권*추 *공*여* 오*문*	전라남도 여수시 오 천4길 *-* 대표 권* 채				
70	중화동	678	129	129	묘	안*권*추 *공*여* 오*문*	전라남도 여수시 오 천4길 *-* 대표 권* 채				
71	중화동	680	1,90 7	1,907	전	권*철	전라남도 여수시 중 화1길 ** (중화동)				
72	중화동	687	142	142	전	임*자	광주광역시 양림동 ***-**				
74	중화동	701- 7	14	14	임야	중*동 *영*원*	전라남도 여수시 중 화동 ***				
82-1	수정동	35	87	87*2/13	전	김*운	전라남도 여수시 수 정동 ***				
83-1	수정동	39	684	684* 6/65	전	정*근	강원도 영월군 영월 읍 봉래산로 ***				
91-1	수정동	50	175	175* 1/13	전	정*근	강원도 영월군 영월 읍 봉래산로 ***				
99	수정동	83-3	561	561 *60/1008	전	신*희	전라남도 여수시 수 정동 ***				
100-1	수정동	84-1		747*1133/6 7320	전	조*순	충청북도 청주시 청 원구 오창읍 오창중 양로 94, ***동 ***호 (한라비발디아파트)				
100-3	수정동	84-1		747*618/67 320	전	조*정	대전광역시 서구 용 문로 54, ***호(괴정 동, 그린빌리지)				
100-4	수정동	84-1		747*618/67 320	전	조*환	광주광역시 북구 첨 단연신로 166, ***동 ***호(신용동, 광주첨 단2지구사랑으로부영)				
100-5	수정동	84-1		747*618/67 320	전	조*환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5길 *				
101-1	수정동	84-2	337	337*1133/6 7320	대	조*순	충청북도 청주시 청				

						원구 오창읍 오창중 앙로 94, ***동 ***호 (한라비발디아파트)			
101-2	수정동	84-2		337*618/67 320	대	조*현	광주광역시 동구 의 재로 **		
101-3	수정동	84-2		337*618/67 320	대	조*정	대전광역시 서구 용 문로 54, ***호(괴정 동, 그린빌리지)		
101-4	수정동	84-2		337*618/67 320	대	조*환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 신로 166, ***동 ***호(신 용동, 광주첨단지구사랑으 로부영)		
101-5	수정동	84-2		337*618/67 320	대	조*환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5길 *		
102-1	수정동	84-3		112* 1133/67320	전	조*순	충청북도 청주시 청 원구 오창읍 오창중 앙로 94, ***동 ***호 (한라비발디아파트)		
102-2	수정동	84-3		112*618/67 320	전	조*현	광주광역시 동구 의 재로 **		
102-3	수정동	84-3	112	112*618/67 320	전	조*정	대전광역시 서구 용 문로 54, ***호(괴정 동, 그린빌리지)		
102-4	수정동	84-3		112*618/67 320	전	조*환	광주광역시 북구 첨 단연신로 166, ***동 ***호(신용동, 광주첨 단2지구사랑으로부영)		
102-5	수정동	84-3		112*618/67 320	전	조*환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5길 *		
103-1	수정동	85		152*1133/6 7320	도로	조*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 구 오창읍 오창중앙로 94, ***동 ***호(한라 비발디아파트)		
103-2	수정동	85		152*618/67 320	도로	조*현	광주광역시 동구 의 재로 **		
103-3	수정동	85	152	152*618/67 320	도로	조*정	대전광역시 서구 용 문로 54, ***호(괴정 동, 그린빌리지)		
103-4	수정동	85		152*618/67 320	도로	조*환	광주광역시 북구 첨 단연신로 166, ***동 ***호(신용동, 광주첨단지 구사랑으로부영)		
103-5	수정동	85		152*618/67 320	도로	조*환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5길 *		
104-1	수정동	91	109	109*2/117	도로	차*철			
105-1	수정동	92-3	1,59 9	1,599*2/117	임야	차*철			
108	수정동	112- 1	29	29	도로			김*찬	토지 대장 소유주
117	수정동	116	83	83	전	장*동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 회길 81, ***동 ****호(덕 충동, 엑스포힐스테이 트2단지)		

□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및 단위		소유자	
								성명	주소
2	종화동	8		분묘	유연단장	4	기		
				망주석		2	식		
				상석	105 x 75 x 25	2	식		
				향로석		2	식		
				혼유석		2	식		
				반월석		5	식		
				둘레석	석축	3	식		
				석축	20m x 0.2	1	식		
				석축	30m x 0.85	1	식		
3	종화동	23		울타리	그물망+목재 +파이프	1	식		
5	종화동	69-6 69-7		창고	목조 스텔트 7.8x3.4	26.52	m ²		
				구조물	철파이프조	4	식		
				무화과	R5 H2	1	주		
				모과	R8 H2.5	1	주		
				대추	R2 H1.5	1	주		
				사철	H1.5 W1	1	주		
				느릅나무	R25 H3	1	주		
				울타리사철	H1 W0.5	25.0	m		
				무궁화	H3-4	2	주		
6	종화동	82		창고	목조스텔트 4.3x3.1	13.33	m ²		
				농막	목조장판	1	식		
				농막	목조장판	1	식		
				축사	철파이프장판	1	식		
				가추	목조합석	1	식		
				물탱크	FRP	1	식		
				대문	목조	1	식		
				비파나무	R8 H2.5	1	주		
				동백나무	R12 H3	2	주		
				당종려나무	H3	1	주		
				감나무	R15 H3.5	1	주		
				광나무	R10 H2.5	1	주		
				사철나무	H1 W1	2	주		
				광나무	R8 H2	1	주		
				팽나무	R12 H2.5	1	주		
9	종화동	136-2		분묘	유연단장	1	기	김*곤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기 적의도서관길 70, ***동 *** 호(정원에코힐)
10	종화동	138		분묘	유연단장	1	기	김*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72길 57, *동 ****호 (서초동,서초트라펠리스)
13	종화동	276-1		유자나무	R18	1	주		
14	종화동	277-4 277-5		사철나무	H4 W3	3	주		
15	종화동	627		주택(공가)	목조스텔트	30.15	m ²		
				가추	목조합석 1.8x4.5	8.10	m ²		
				가추	목조스텔트 2.2x4	8.80	m ²		
				변소및창고	목조합석 1.1x1.3	1.43	m ²		
				견사	목조합석	1	식		
				가추(차양)	철파이프 및 목조합석 6.7x0.8	5.36	m ²		
				단풍나무	R28 H5	1	주		
				동백나무	R8 H2.5	1	주		
				후박나무	R6 H2.5	1	주		
				당종려	H2.5	1	주		

			분묘	유연단장	2	기		
19	중화동	650-1	유자나무	R25 H4	2	주		
			배나무	R30 H7	1	주		
			감나무	R20 H7	9	주		
			감나무	R30 H7	1	주		
			밤나무	R30 H7	1	주		
			동백나무	R20 H5	1	주		
			동백나무	R3 H2	1	주		
			살구나무	R35 H8	1	주		
			동백나무	R5 H2.5	1	주		
			동백나무	R2 H2.5	1	주		
			동백나무	R18 H4	1	주		
22	중화동	675-1	농막	목조장판	1	식	임*성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_**, 2층(오치동)
			울타리	그물망+목재 파이프	1	식		
			복숭아나무	R15 H2.5	1	주		
			감나무	R15 H2.5	5	주		
			동백나무	R15 H2.5	1	주		
			매실나무	R15 H2.5	1	주		
30	수정동	260-11	매실나무	R2 H1.5	3	주		
			울타리	그물망+철재	1	식		

5. 기 타

가.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지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공원과(☎061-659-46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여수시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제14조(구성) 및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위원회 구성 등)에 의거 「여수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여 수 시 장

1. 위원회 개요

가. 근 거 : 「여수시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제14조

나. 인 원 : 15명

다. 역 할

-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아동정책영향평가 등 시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2. 접수기간 : 2024. 9. 2.(월) ~ 9. 20.(금)

3. 모집인원 : 8명(위촉직)

4. 임 기 : 2024. 9. 25. ~ 2026. 9. 24.(2년) / 연임 1회 가능

5. 모집구분

- 사회복지·아동복지 분야전문가(아동의 보호자 대표 및 아동 대표 포함) 3
- 법률전문가 2
- 학계전문가 1
- 비정부기구 2

6. 제출서류

- 가. 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 나. 관련 증빙자료 1부

7. 접수처 및 방법

- 가. 접 수 처 : 여수시청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친화팀
- 나.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전자메일(E-mail)
 - 주 소 :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59675
 - 이메일 : jawcare@korea.kr
 - 연락처 : ☎ 061-659-3754

8. 선정 방법 및 기준

- 가. 선정방법 : 서면심사 후 적격자 선정

나. 선정기준

- 해당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활동경력이 많은 사람
-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다양하고 많은 사람
- 동일 조건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선정

9. 대상자 선정 통보 : 2024. 9. 23.(선정 위원 개별통보)

10. 기타 안내사항

가.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 완료된 신청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원 선정 후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원 위촉을 취소합니다.

다.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위원회 구성 등)에 의거 공고일 현재 여수시 운영 3개 위원회를 초과한 위촉자는 제외됩니다. (단,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여성위원은 예외)

라.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여성가족과(☎659-37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추진위원회 신청서 1부.

2. 이력서 1부.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p>본인은 「여수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4. . . .</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인 : (서명)</p> <p>여수시장 귀하</p>		
<p>【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직장, 경력, e-mail, 자격증 보유현황 및 위원회 참여 경력 <p>【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수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기초자료 <p>【개인정보의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된 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하지 않음 <p>단,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여수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촉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원 명단 공개 시 성명, 직업이 공개될 수 있음)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p> <p>【개인정보 보유 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해당정보 지체 없이 파기함 <p>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기간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p> <p>가. 여수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신청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존기간 : 3년 - 보존사유 : 소관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참고 또는 사실의 증명 필요성 - 근 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6조(보존기간) 		
<p>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목적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p>		
<p>【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주체는 여수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위원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p>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p>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 양식업 면허 처분 내역 ◆

면허 번호	양식업의 종류	시설 방법	면적 (ha)	양식장 위치	면허기간	수산자원 조성금 (천원)	양식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11957	패류양식	바닥식 (살포식)	9.00	화정면 여자	2024.10.13. 2034.10.12.	-	순천시 해룡면 연향로***	김*석	11001 재개발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24. 9. 2.

여 수 시 장

[여수시 공고 제2024 - 2653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우리시 관내 건축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4년 9월 2일
여수시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2. 대상사업 내역

가. 사 업 명 : 돌산읍 평사리 근생 및 문화집회시설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주)다락

다. 시 공 자 : (주)오성종합건설

라. 감 리 자 : 건축사사무소맥토 김성춘

마. 사업개요

1) 위 치 :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405-52번지

2) 대지면적 : 6,213㎡

3) 연 면 적 : 1,497.74㎡

4) 층 / 동 : 지하1층, 지상2층/1동, 지상1층/2동

5) 용 도 :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식물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소매점

5) 공사기간 : 2024. 7. 1. ~ 2025. 2. 20.

※ 주요공정계획서 별도 첨부

7) 순공사비 : 2,420,000,000원

8) 안전점검 비용 : 2,400,000원(VAT 별도)

바. 건축허가일 : 2024. 4. 30.

3. 안전점검 내용(과업내용)

가. 점검종류

- 거푸집동바리(2회)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여수시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등록명부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4-2204호

나. 결정방법

1)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별표1]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 및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함. 단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최종평가】

평가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수행능력	10점	평점=평가점수 X 10%
수행가격	90점	
합 계	100점	

-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 3)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임.

5. 응모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4. 9. 5.(목) 09:00 ~ 9. 11.(수)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다.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서식1]
-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서식2]
-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서식3]

- 가격제안가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의 87.745%

※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4) 서약서 1부[서식4]

6. 개찰일시 : 2024. 9. 12.(목) 이전 개별 통보(우선순위 1개 업체만 통보)

* 우선순위 업체(1,2순위)의 점수가 동일 할 경우 2개 업체 통보

7.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개별 통보 받은 업체에 한함.)

가. 제출기간 : 2024. 9. 12.(목) ~ 9. 13(금)

나. 제출서류(사실확인 서류)

-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각 1부.
- 2) 안전점검 수행실적 각 1부.(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적과 기존건축물 안전 점검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
-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 4)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 제출.

※ 사실 확인 서류는 [별첨 1]의 양식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본 1부를 아래 내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1) 좌측제본(크기 A4), 견출지로 항목 구분 (2) 색상 : 표지 백색, 간지 색지

8.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4. 9. 12.(목) 10:00~ 17:00까지

나. 열람방법 : 여수시청 허가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다.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 점 처리합니다.
-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허가과(☎061-659-41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서식 1부
 2. 공정표 1부(별첨). 끝.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 사업명		
직무분야	건축분야 [] 종합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 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3] 4. 서약서 1부 [서식4] 	수수료 없음
----------------------	-----------------------------------------------------------------------------------------------------------------------------------------------------------------------------------	---------------

[서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자기평가서

1.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1. 참여 기술인	50	소 계	50	
		· 특급기술자: 7점 × 인원		
		· 고급기술자: 5점 × 인원		
		· 중급기술자: 3점 × 인원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간)	40	소 계	40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개소	25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1점 × 개소	15	
3. 점검·진단 평가결과	5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경우 0점 처리	5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 A- 이상	5	
		· BBB- 이상	4	
		· BB- 이상	3	
		· B- 이상	2	
		· CCC+ 이하	1	
		· 미제출	0	
총 계	100	평점 : 평가점수 × 10%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직무분야 건축,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2. 수행가격

평가항목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제안가격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70	80	90	
	· 예정가격 2번째 근접	65	75	85	
	· 예정가격 3번째 근접	60	70	80	
	· 예정가격 4번째 근접	55	65	75	
	· 예정가격 5번째 근접	50	60	70	
	· 예정가격 6번째 근접	45	55	65	
	· 예정가격 7번째 근접	40	50	60	
	· 예정가격 8번째 근접	35	45	55	
	· 예정가격 9번째 근접	30	40	50	
	· 예정가격 10번째 근접	25	35	45	
	· 예정가격 11번째 근접	20	30	40	
	· 예정가격 12번째 근접	15	25	35	
	· 예정가격 13번째 이하	10	20	30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2.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3.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최종평가】

평가항목	기준	심사방법
수행능력	10점	평점=평가점수 X 10%
수행가격	90점	
합계	100점	

[서식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가격내용	사업명			
	제안가격	금	원정(₩	원정) ※부가세별도
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제안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23, 25-1, 23-3번지 건축신고사항 변경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2024. 9. 2.

여 수 시 장

1. 위 치 : 삼산면 서도리 23번지
2. 도로면적 : 19.00m²
3. 도로길이 : 19m
4. 도 로 폭 : 1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m ²)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950	19.00	
	삼산면 서도리	23	전	950	19.00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2024년도 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실태조사 결과 전산입력 보조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실태조사 결과 전산입력 보조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 9. 2.

여 수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신분 (기간제근로자)	채용예정부서	채용예정인원	근무기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실태조사 결과 전산입력 보조	교통과	1명	2024. 9. 19. ~ 2024. 10. 2.(2주) (09:00 ~ 18:00 / 1일 8시간, 월~금)

보수	기타
일 85,680원 (생활임금 일 6,800원 포함)	○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한 금액이며 보수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여수시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에 따름

2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 2024. 9. 2.(월) ~ 2024. 9. 9.(월) (7일간)

나. 접수기간 : 2024. 9. 2.(월) ~ 2024. 9. 9.(월) 18:00까지(근무시간 내)

다. 접수처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 교통과(교통행정팀)

라.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전자우편(qkrdmswls49@korea.kr) 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에 한함.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전자우편의 경우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접수 후 확인 요망(☎061-659-4127)

3 직무기술

주요 업무	○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 시스템 전산입력 및 자료 대사 등	
필요 역량	○ (공통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 (직무역량) - 교통유발부담금 시스템 입력, 실태조사표 자료대사	
필요 지식 (개인역량)	○ 시스템 전산입력 및 자료 대사에 능한 자	
응시 자격요건	관련분야 : 교통유발부담금 실태조사 전산입력 및 자료대사	
	자격	○ (공통자격)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로 접수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여수시로 되어 있는 자
	경력	○ 해당없음
	학위	○ 해당없음
우대요건	○ 해당없음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4 채용분야 가산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서류, 면접 각각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서류, 면접 각각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

5 응시제한

가. 시청내 공직자 친인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출 또는 회피하여 공정한 채용시험을 방해하는 등 비정규직 채용 응시제한을 받은 자(해당 응시일을 기준으로 3년간 응시 제한)

6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자격요건 등 응시자격에 대한 적격여부 서면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9. 10.(화) / 시 홈페이지공고 및 개별 통보

* 단, 응시인원이 채용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소수점은 올리며 전부 합격처리)

서류전형 기준					
① 자기소개서					
점수	4점	8점	12점	16점	20점
내용	4개 평가 지표 중 어떤 것도 잘 드러나지 않음	4개 평가 지표 중 1개가 명확히 드러남	4개 평가 지표 중 2개가 명확히 드러남	4개 평가 지표 중 3개가 명확히 드러남	4개 평가 지표 모두 명확히 드러남
② 직무수행 계획서					
점수	0점		10점	20점	
내용	2개 평가 지표 중 어떤 것도 잘 드러나지 않음		2개 평가 지표 중 1개가 명확히 드러남	2개 평가 지표 모두 명확히 드러남	

나. 2차 면접심사 : 2024. 9. 12.(목) 15:00 (예정) * 일정 변동 시, 개별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 2024. 9. 13.(금) 예정 / 시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지

라. 면접시험 평정표

평가항목(5개항목)	점수	비고
계	50점	
가. 공공업무 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라.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 면접시험 시 평가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중” 이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중” 이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 서류전형 심사점수와 면접 심사기준표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함

-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여 결원 시 차점자 순으로 충원
- 심사위원 2인 이상에게 부적격 판정 받을 시 불합격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동점 시 면접 평정항목의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로 결정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 양식을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 1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붙임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

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라. 경험 및 경력기술서 1부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바.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기준으로 생년월일 및 현재 주소가 나오게 발급)

사. 시청 내 공직자 찬인척 확인서 1부

(시청 내 공직자 찬인척 관계 해당 사항이 있음에도 미제출 또는 회피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됨)

아. 경력증명서 각 1부(원본,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증빙자료 미제출시 해당 경력 인정안함

8

기타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응시자 스스로 기재된 사항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나. 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다.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채용 선발을 위해 여주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있음에도 미제출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해당 채용 합격이 취소됩니다. 또한, 해당 응시일로부터 3년간 여주시 비정규직 채용 응시에 제한됩니다.**
- 라.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되 학위 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유효기간이 없는 증명서류는 공고일 전 기준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여부 확정된 날의 14일 이후부터 구직자의 요구 시 30일 이내에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6개월 후 파기합니다.
-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바. 본 모집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사.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교통과 교통행정팀(☎ 061-659-4127)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3. 직무수행계획서 1부.
 4. 경험 및 경력기술서 1부.
 5.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6.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관계 확인서 1부.

【붙임 1】

응 시 원 서

채용분야		접수번호	채용담당자 기재
-------------	--	-------------	----------

1.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지원직무	
현 주 소	도로명주소 번호 앞까지만 기재(동호수 등 세부내역은 미기재)		
연 락 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가점항목	<input type="checkbox"/> 취업지원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의사상자		

2. 경력사항 <small>*직무관련 경력사항만 기입</small>				
구분	소속조직	역할	활동기간	활동내역
<input type="checkbox"/> 경험 <input type="checkbox"/> 경력				
<input type="checkbox"/> 경험 <input type="checkbox"/> 경력				
<input type="checkbox"/> 경험 <input type="checkbox"/> 경력				
<input type="checkbox"/> 경험 <input type="checkbox"/> 경력				
<input type="checkbox"/> 경험 <input type="checkbox"/> 경력				

직무관련 주요내용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응시원서 등 제반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뒷면>

1. 응시원서 및 제반서류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기재착오 또는 누락은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2. 인적사항은 서류전형을 위한 필수정보이며, 나머지 항목은 선택적으로 활용합니다.
3. '제반서류'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성요령 】

- ① **응시원서** : 접수번호를 제외하고 인적사항은 필수로 기재하되 나머지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하며 응시자 이름과 (인) 부분에 서명하여 제출
 - * **연 락 처** : 상시 연락 가능한 번호 기재
 - * **주요경력** : 근무경력
- ② **이력서** : 인적사항 및 해당사항 전부 입력
- ③ **자기소개서** : 본문 안 작성요령 확인
- ④ **직무수행계획서(해당분야)** : 본문 안 작성요령 확인
- ⑤ **경험 및 경력기술서(해당분야)** : 본문 안 작성요령 확인
- ⑥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동의 체크 및 본인 서명
- ⑦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확인서** : 친인척 기준을 확인한 후 반드시 기입

(※) 표시가 되어 있는 응시번호 란은 기재하지 않음

【 붙임서류 】

1. 주민등록초본 1부(필수, 생년월일 및 현주소만 나온 자료)
2. 경력증명서 각 1부(경력보유자, 경력별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 붙임서류가 미 제출된 경우 응시원서에 기입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음

【붙임 2】

이 력 서

(1쪽)

<필수>			
성 명	(한글)		
주 소 (현거주지)	(우편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 요 경력사항	회사명	담당 업무(직무내용)	근무기간(연, 월)
			년 월 ~ 년 월
자격증 및 특기사항	자격종목	자격증번호	취 득 일
			(년 월 취득)
			(년 월 취득)
			(년 월 취득)
	(기타실적, 능력 등)		
장애인 여부	장애종별	등급	장애인등록번호
취업대상자 및 저소득층 여부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번호작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취업대상자 및 저소득층여부는 해당항목에 ‘○’ 로 표시 후 증빙자료 첨부

【붙임 3】

자기소개서

(2쪽)

○ 각 항목에 대하여 600자 이내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칸을 별도로 눌러 활용가능>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본 항목에 따라 기술하고
지원동기, 성격 및 가치관, 업무의 전문성, 앞으로의 다짐 등 자신의 생각
등이 잘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작성 분량은 2매 이내로 하고 학교명, 출신지, 예전 직장, 부모직업
등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특정 분야에서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 시키거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여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갑작스럽게 발생한 주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해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활용한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

(3쪽)

3. 과거 업무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과 이견이 있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와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원자 본인이 지원한 업무에 대해 가장 적합한 인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와 근거를 제시하고 앞으로의 다짐에 대해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수행계획서

(4쪽)

○ 주요내용1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담당예정 직무에 대한 이해도 및 업무 추진전략(계획)의 충실성과 적실성을 평가하므로 내실 있게 작성 바랍니다.>

(유의사항) 작성 분량은 2매 이내로 하고 내용부실, 응시분야와 관련 없는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별지 활용 가능

1. 응시분야 직무수행 추진계획

2. 응시분야 직무수행 추진전략

경험 및 경력기술서

(4쪽)

○ 작성요령

- 이력서에 기재한 직무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에 대해 상세히 기술
-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
- 대리 작성, 허위 작성 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음

1) 소속 조직 / 본인이 맡은 주요 역할

2) 주요 활동 내용 및 성과(정량적 측면과 정성적 측면을 나누어 작성 기재)

3) 활동 성과를 높이기 위해 본인이 기울인 노력과 행동

4) 본인의 성과(업무 추진)으로 인해 조직에 기여한 내용 및 기여 정도

5) 지원분야 업무 수행 시, 본인의 강점과 기여할 수 있는 측면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제공받는 기관	여수시
이용 목적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공직자 이해관계 확인 포함)
제공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2년)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제공거부에 따른 불이익	채용 진행에 필요한 필수 개인정보 미 제공 으로 당해 채용시험 지원 불가

2024. . .

성 명

(서 명)

여수시장 귀하

【붙임 7】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관계 확인서

○ 성 명 :

○ 응시번호 :

○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현황

* 배우자, 본인의 4촌 이내 친족,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별첨 참조)

연번	친인척 성명	친인척 직급(생년월일)	본인과의 관계
1			
2			
3			
해당 없음			

상기 본인은 공정한 채용시험 응시를 위하여 시청 내 친인척현황 조사에 동의합니다.

본인이 작성한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발견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채용이 취소되어도 이의제기 하지 않겠으며 해당응시일로부터 3년간 여수시 비정규직 채용에 응시가 제한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확인하며 서약합니다.

2024. . .

작성자 :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 7-1】

작성 대상 친족 기준

구분		0촌	1촌	2촌	3촌	4촌
본인	친가	부부	○ 부모 ○ 자녀	○ 조부모 ○ 형제 및 그 배우자	○ 백부, 숙부, 고모 및 그 배우자 ○ 형제의 자녀(조카)	○ 백부, 숙부, 고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
	외가		○ 외조부모	○ 외백부, 외숙부, 이모 및 그 배우자	○ 외백부, 외숙부, 이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	
배우자	친가		○ 부모	○ 조부모 ○ 형제 및 그 배우자	○ 백부, 숙부, 고모 및 그 배우자 ○ 형제의 자녀(조카)	○ 백부, 숙부, 고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
	외가		○ 외조부모	○ 외백부, 외숙부, 이모 및 그 배우자	○ 외백부, 외숙부, 이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8. 30.

여 수 시 장 (인)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내용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이동 사유	비고
	별	지		기	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 주소정보팀(☎061-659-335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 변경 · 폐지 고시 조서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건물번호변경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조산로 175-111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조산로 175-109	20240830	건축물 순번 오류 도로명주소 변경	20091013	도로가 지나는 지역명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산191-1, 산191-2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조산로 175-111	20240830	건축물 신축	20091013	도로가 지나는 지역명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현천리 1136-11, 1136-8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중촌1길 11-73	20240830	건축물 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안산동 산51-14	전라남도 여수시 안심산길 65 (안산동)	20240830	건축물 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700-4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개도중앙로 6	20240830	건축물 신축	20091013	기존 군도노선유지(화산-호령간 도로)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339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2길 10 (오천동)	20240830	건축물 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산86, 1384-2, 1386-11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연말길 46	20240830	건축물 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 고려
건물번호폐지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개도중앙로 6		20240830	건축물 멸실	20091013	기존 군도노선유지(화산-호령간 도로)
건물번호폐지	전라남도 여수시 관문서5길 9-1 (관문동)		20240830	건축물 멸실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632, 632-2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성재길 40-19	20240830	건축물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 고려

사물주소 폐지 고시

우체통에 부여된 사물주소를 「도로명주소법」 제24조제3항(사물주소),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사물주소의 부여·변경·폐지 절차)에 따라 사물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24. 8. 30.

여 수 시 장 (인)

○ 사물주소 폐지 내용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이동 사유	비고
	별	지		기	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 주소정보팀(☎061-659-335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사물주소 정의

- 육교 및 철도 등 옥외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옥외 대피 시설, 버스 및 정류장 주차장 등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치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 사물주소 부여 기준

- 시설물이 건물의 외부에 있는 경우는 해당 시설물의 사물번호기준점이 접하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사물번호로 부여할 것
- 시설물이 건물의 내부에 있는 경우는 해당 시설물의 사물번호기준점에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7조(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기준 등)의 상세주소 부여 기준을 준용할 것

여수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4년 8월 30 일

여 수 시 장 권기명



여수시 훈령 제 4/4 호

붙임 여수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여수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수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여수시 및 소속기관의 채용절차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그 밖에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 등에 따른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공무직근로자”란 「여수시 공무직 채용 및 근무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단시간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채용권자”란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등”이라 한다)의 채용·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6. “관리부서장”은 공무직의 채용 협의, 근로계약 체결 및 관리, 복무상황 지도·점검, 근무부서 이동에 관한 사항 정리, 휴직의 허가 및 복직관리 등 인사관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공무원으로서 인사부서의 장을 말하며,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사용부서장이 채용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복무관리를 총괄하는 관리부서장이 된다.
7. “사용부서장”이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
8.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9.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10. “대체인력”이란 휴직·파견·퇴직·해고 등에 의한 결원의 발생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인력으로 서 별도 정원 총원 없이 대체인력뱅크에서의 총원으로 임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11. “대체인력뱅크”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결원이 예상되는 직위의 업무 대행을 위해 업무 성격에 따라 사전에 확보하여 구성한 인력풀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근로자의 신규채용에 적용한다.
- ②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조례 및 규칙 등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채용 관련 심의기구

- 제4조(채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여수시 비공무원 채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채용 관련 심의기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을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② 심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근로자 채용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원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채용에 관한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에 따라 해당 업무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대해 사전 심사한 경우
 2. 3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3. 갑작스러운 사직, 휴직 등으로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인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여수시 소속 공무원 2명 이상을 위원으로 지명해야 한다.
- ④ 위원은 당해 심의안건 종료와 함께 해촉된 것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사업무 담당 팀장 또는 주무관을 간사로 둔다.

- 제6조(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의 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외부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 ②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3.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기타 그 밖에 채용분야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심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③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제4조제2항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된다.
- ②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기구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전항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의제를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고, 심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의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한다.

제3장 채용

제9조(채용원칙) ①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나이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전문인력이나 지역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고령자 및 준고령자 등에 대한 사회형평적 채용이 필요한 경우 채용권자는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제한경쟁 방식의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 응시자격 기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보훈 특별고용 등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채용권자는 채용 과정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고, 채용 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내용에 기반을 둔 능력 중심의 채용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서류심사 기준 다양화, 직무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을 도입하여 해당 직무·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채용권자는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당 연도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시험 방법 등 채용내용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채용담당부서의 의무) ① 관리부서장은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②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는 응시 원서,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 전형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되며, 검수·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부에서 실시해야 한다.

③ 외부 채용대행업체에 채용 대행을 맡기는 경우 해당 전형일 전에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의 사전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검수·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업체 내부에서 이를 실시해야 한다.

제11조(채용절차 등)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다음 각 호의 시험방식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제1호와 제5호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1. 서류전형
2. 필기시험
3. 인·적성검사
4. 실기시험(체력검정 포함)
5. 면접전형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체력검정의 경우 합리적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국민체력100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체력검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인·적성검사의 결과를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채용계획 수립 등) ① 근로자의 채용수요가 발생한 부서에서는, 채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채용담당 부서에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관리부서장은 근로자의 등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채용권자가 확정한다.

제13조(채용공고) 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권자는 시 누리집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원서접수 마감일 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채용 분야별 채용 예정 인원, 업무 내용, 응시 자격, 보수 및 계약기간
2. 채용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
3.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 응시원서 교부 및 서류접수 일정
5. 전형 시기 및 방법(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6. 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
7.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원서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단순한 오류 사항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이 응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에 공고한 그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3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3. 결원의 신속한 충원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경우

④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제1항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고용노동부 워크넷 구인 등록자를 채용하는 경우
2. 대체인력뱅크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3.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 채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 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5. 기관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⑤ 채용권자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⑥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14조(대체인력뱅크의 구성) ① 채용권자는 직원의 휴직·파견·퇴직·해고 등 결원 발생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총괄부서에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하기 위하여 지역, 직무, 직급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구분하여 모집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하는 경우 모집인원, 임용예정직급, 임용자격기준, 선발기준 및 방법, 보수, 근무조건, 구비서류 등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시 누리집에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15조(대체인력의 임용) ① 채용권자는 제14조제1항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뱅크 중에서 관리부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대체인력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대체인력뱅크에서 대체인력을 선발한 경우 본 기준에 규정된 채용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채용 심사위원 선정 등) ①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 실기시험, 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내부·외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단,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은 <별지 제 6호 서식>에 따라 내부·외부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만 한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3.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② 시 공무원으로서 퇴직한 자로서, 퇴직 직전 2년 이내 근무이력이 있는 부서와 신규 채용부서가 동일한 경우 또는 고문변호사 등 시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사람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③ 채용 심사위원은 당해 심사안건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 것으로 한다.

제17조(채용 심사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교우, 동료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사람
2.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관리부서장 및 담당자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 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심사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관리부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 심사위원 회피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정하여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④ 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채용권자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해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

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채용권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여수시의 채용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제18조(원서접수)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1. 응시원서
2.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4. 그 밖에 채용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

② 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 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제19조(서류전형) ①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서류전형의 심사기준,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③ 채용부서의 장은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시 누리집에 공고한다.

제20조(필기전형 등) ① 채용예정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전형 및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필기전형의 시험 범위, 시험 과목, 문항 수,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하며, 외부 전문업체 위탁의 방식으로 시행한다.

③ 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채용계획 수립 시 채용 관련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한 실기시험 전형기준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④ 필기전형 및 실기시험 합격자 확정, 합격자 발표 방법은 시 누리집에 공고한다.

제21조(면접전형) ①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전형·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전형·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 면접전형의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③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④ 채용권자는 면접위원에게 제3항을 포함한 면접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22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 ① 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법정 가점을 부여한다. 단, 「국가유공자법」등 법정가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 처리 기준은 채용공고에 따른다.
- ④ 채용권자는 채용공고시 제1항 내지 제3항까지의 규정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제23조(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①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 ②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요건 등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 ③ 채용권자는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소수점 이하는 1명)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로 이내로 하되, 해당 분야의 다음번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한다.
- 제24조(채용점검위원회의 채용과정 점검) ① 채용권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채용방식으로 공무원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다.
- ② 채용점검위원회는 채용을 담당할 부서장 및 담당자를 제외하며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권자는 충실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채용시험 등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채용점검위원회의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채용권자는 합격자 발표를 하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를 발표할 수 있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5조(채용 결격사유) ①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취업규칙 등 별도의 자체 규정에 따른다.
-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 시 채용 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받고, 확인해야 한다.

제4장 채용 공정성 관리

- 제26조(채용 공정성 관리) ① 채용권자는 감사부서의 장이나 그 대리인을 채용계획 수립, 서류 및 면접전형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 ② 감사부서는 관리부서장이 관리하는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감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제27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부정합격자”라 한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4.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에 제1항의 부정합격자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28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지 제8호 서식>과 같이 진행하며, 기타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제29조(채용 구비서류)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5. 결격사유 서약서 1부
6.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7.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30조(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①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보존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지원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 전자우편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31조(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으로의 전환) 채용권자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심사위원 서약서

관련문서	○○○○과-0000호		
채용구분	[]공무직 [] 기간제	전형구분	[] 서류전형 [] 면접전형

서 약 서

본인은 0000 근로자 채용 심사위원으로 위촉(임명)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심사위원으로 위촉(임명)된 사실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누설하지 않는다.
2. 심사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3. 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의 회피를 신청한다.
4. 기타 공정한 시험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본인은 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향후 여수시의 심사위원 자격이 제한됨을 알으며, 제반 보안사항 유출 등 채용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심사위원 회피 신청서

심사위원 회피 신청서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상기 본인은 20 . . . ()에 치러지는 여수시 _____ 채용 _____ 전형 심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해관계자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이해관계자의 면접을 회피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이외 이해관계자는 없음을 확인하고 추후 거짓임이 밝혀지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며 회피를 신청합니다.

직종	응시번호	이름	회피사유

20 . . .

심사위원 : (서명)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

- 응시번호 :
- 성 명 :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20 . . . ()에 치러지는 여수시 _____ 채용 응시자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_____전형의 심사위원을 기피하겠습니다.

심사위원 기피 사항		
위원번호	위원명(알고 있는 경우)	기피사유

본 시험의 기피대상위원 이외 이해대상자는 없음을 확인하고 기피대상 및 사유가 추후 거짓임이 밝혀지면 시험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한 자로 간주하여, 이에 따라 채용이 취소되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고 확인하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기피 신청자 : _____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전형별 심사 필수인원 및 외부위원 비율

구 분	서류전형		면접전형	
	필수인원	외부비율	필수인원	외부비율
공무직	2명 이상	1/2 이상	3명 이상	전원
기간제	2명 이상	-	3명 이상	1/3 이상

※ (공무직) 내·외부위원 전형별 중복 위촉 불가

※ (기간제) 내부위원에 한해 전형별 중복 위촉이 가능하나, 면접전형의 내부위원은 6급 공무원 이상으로 하며, 면접전형 응시자가 1명일 경우 면접위원은 내부위원 2명으로도 가능

※ 서류·면접을 제외한 기타 전형의 심사위원 구성은 채용계획으로 자율 구성하되 합리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성

□ 외부 채용심사위원 선정자격

-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조교수 이상)
-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전문가, 직무 종사 경험자)
-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타기관 채용담당자, 인사위원)

◆ 외부위원 위촉 불가 사례

- ▶ 고문변호사 등 시와 이해관계가 있어서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간주되는 자
- ▶ 여수시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로서, 퇴직 직전 2년 이내 근무이력이 있는 부서와 신규 채용부서가 동일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채용시험 가점기준

구 분		부가점수
법정 가점	<p>「국가유공자법」제29조</p> <p>「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p> <p>「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p> <p>「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p> <p>「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p> <p>「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p>	<p>관련법령에 따름</p> <p>(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p>
사회 형평 가점	<p>「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p> <p>「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p> <p>「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p> <p>「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p>	<p>채용공고에 따름</p> <p>(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최대 3%)</p>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 가점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별지 제8호 서식>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
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②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前이라도 우선 시행**

-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